

의안번호	제3113호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의결 사항	
----------	--

고성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고 성 군 수
제출연월일	2026. 7. 10.

고성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113호
----------	--------

제출연월일: 2026. 7. 10.

제출자: 고성군수

1. 개정이유

고성군 노인요양시설 중 고성군노인요양원이 2021. 3. 10. 운영을 종료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고성군 노인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별표로 신설(안 제2조, 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제31조 및 제34조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복지지원과-15188(2026. 4. 3.)호]

라. 기 타

1)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26-712호

가) 예고기간: 2026. 3. 30.~2026. 4. 20.(21일간)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 5)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4. 본문: 붙임과 같음

고성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고성군 노인복지시설(이하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성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신설 0000. 00. 00.>

고성군 노인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제2조 관련)

종 류	명 칭	위 치	비 고
노인요양시설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남포로79번길 125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종류별 명칭과 위치) 고성군 노인복지시설(이하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제2조(명칭과 위치) 고성군 노인복지시설(이하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종류별	명칭	위치
노인요양시설	고성군노인요양원	고성군 고성읍 남포로 79번길 103-10
노인요양시설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	고성군 고성읍 남포로 79번길 125

고성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를 미첨부함.

작성자: 복지지원과장 천 미 옥

□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 1. 29., 2013. 6. 4., 2017. 3. 14., 2023. 10. 31.>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 8. 3.>

1.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삭제 <2011. 6. 7.>

②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비용 및 입소절차와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